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16

발의연월일: 2025. 6. 11.

발 의 자:주철현·조계원·권향엽

어기구・황운하・조인철

천하람 • 박수현 • 허 영

김문수 · 정성호 · 문대림

의원(12인)

제안이유

석유화학산업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 수출, 투자 및 고용 창출에 중추적인 산업으로서 전·후방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커서 국민경제 및산업생태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대규모 시설투자와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필수기간 산업임.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 및 기술개발 강화 등으로 인하여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및 환경친화적 구조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 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안 제7조).
- 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9조).
- 마.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석유화학 핵심 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1조).
- 바.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 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2조).

- 사.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3조).
- 아.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4조).

법률 제 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석유화학산업"이란 석유·천연가스 또는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기초유분을 생산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합성수지·합섬원료·합성고무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2.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란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 및 전략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 3. "석유화학사업자"란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4. "사업재편"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을 말한다.
- 5. "사업재편 승인기업"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석유화학사업자를 말한

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지원 및 규 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 률을 적용하는 것이 석유화학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 률을 적용한다.

제2장 석유화학산업 세제 및 재정 등 지원

- 제5조(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투자 또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 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및 과세 이연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비처리, 자산재평 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1. 노후 또는 과잉설비(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쇄·감축에 따라 자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 2.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또는 양도·양수하는 경우
- 3. 고효율 또는 저탄소 설비로의 전환을 위하여 설비투자를 하는 경 우
- 4. 노후하거나 에너지효율이 낮은 설비를 양도하는 경우
- 제6조(재정 지원 등) ①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 2. 고부가가치 또는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을 위한 공공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 3. 민간주도로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협업하여 수행하는 석유 화학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 4. 석유화학산업 관련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개선, 노후 설비의 해체 및 생산 방식의 전환에 대한 보조금
 - 5. 지방에 대한 석유화학사업자의 핵심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입지 보조금, 기반시설 연계 투자보조금 등 지원
 - 6.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 유동성 부족의 해소를 위한 자

금 대출, 지급보증 등 금융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5.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기준·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전기요금 감면)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규제 특례 등 추진)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산업단지 개발, 생산시설 신·증설, 생산공정 개선, 설비 폐쇄 등과 관련된 환경·소방·건축·에너지·안전 분야 인·허가 등 절차의 통합 또는 간소화
 - 2.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대한 규제의 특례

- 3. 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에 따라 필요한 기술 검증이나 평 가 기준의 미비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 제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재편 경우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1. 설비 가동률의 조정. 생산량 감축 또는 감산에 관한 협의
 - 2. 품목별 생산량의 조정 및 출하 시기 조정 등 수급 안정화에 필요 한 협의
 - 3. 공급능력 축소 또는 공정합리화를 위한 공동 생산 및 투자, 관련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 1. 석유화학산업 구조적으로 공급의 과잉, 수익성 악화 또는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의 산업위기 상황일 것
 - 2. 석유화학산업의 공급망 안정,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의 공동행위일 것

- 3.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석유화학사업자 간 과도한 차별이 없고, 공 동행위가 특정 석유화학사업자에게만 부당하게 유리하거나 공동행 위 참여여부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닐 것
- ③ 석유화학산업의 생산구조 전환, 설비통합 또는 사업재편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서 둘 이상의 석유화학사업자 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주고 받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 1. 설비 가동률, 생산능력, 원단위(단위 생산량을 기준으로 에너지· 원료 등 자원의 소비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제품별 손익 등 사업재편 검토에 필수적인 정보
- 2. 기업 합병 또는 설비통합을 위한 실사 및 검토 과정에서 공유되는 비공개 경영 정보
- 3.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승인 또는 조건부 지도에 따른 정보 공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 적용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사업재편의 유도)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석유화학사업자에게 사업재편 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재편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경우 석유화학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

다.

제3장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지원

- 제11조(연구개발 지원) ①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지원 및 기술료 감면
 - 2. 시범설비, 평가시설 등 공용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활용 체계 구축
 - 3.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공 공 인증·평가제도 및 우선 구매제도 도입
 - 4. 산업계·학계·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업체계형 연구개발사업 지원
 - 5. 고부가 · 탄소중립 · 친환경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 ③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금액이 민간기업의 회계상 부채로 과도하게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회계기준을 개선하거나 정책금융 지원과 연계하여 재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인력 양성 지원) ①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고도화된 공정·설비 운용 및 환경친화적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고급 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치 및 교육과정의 운영
 - 2.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계약학과등 의 설치·운영 지원
 - ③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미래 기술 수요와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과 교육체계 개편 방향 등을 포함한 대책을 제1항에 따른 인력 양성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

제13조(고용 지원) ①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 1.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및 「고용정책 기본 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확대 적용
- 2. 사업재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배치전환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3. 희망퇴직, 순환근무, 휴직 등 일시적인 고용인력 유연화 방안에 대한 사회보험료 등의 지원
- ③ 정부는 사업재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고용규모가 축소된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석유화학사업자의 성장 가능성과 고용확대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지역경제 지원) ①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 1. 석유화학산업 관련 협력업체, 물류업체, 정비업체 등 연관 산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

-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 내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 대상 조세 감면 및 납세 유예, 정책자금 대출 상환 유예 등 세제 및 재정 지원
- 3.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개선 또는 유휴부 지를 활용한 에너지전환 설비 구축 등 기반시설 보강
- 4. 사업재편에 따라 필요한 공동교육훈련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 고용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 및 유관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